

광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19가단5086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재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C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10. 접수 제122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5. 접수 제1939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E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8. 12. 3. 접수 제167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A은 B의 불법행위로 하반신 마비 등의 손해를 입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 6. 1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6나14491호)이 확정되었다.

B는 A에게 240,435,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처분행위

1)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경 피고 C에 근저당권설정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5.경 피고 D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3)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경 피고 E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A은 2019. 3. 26. 경 B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B는 2019. 6. 14. 경 광주지방법원 2019개회50874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9. 11. 경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마. B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시가 2,000,000원 상당인 F 차량, 시가 6,399,549원 상당의 G 지게차, 시가 2,200,000원 상당의 H 차량을 소유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8.경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96,8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바. B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으로 I조합에 대한 근저당 피담보채무 163,65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9,300,000원, A에 대한 채무 327,650,498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부인의 선언이 아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채무부존재확인 등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법률관계의 이행 내지 확인청구이어야 하고, 이러한 이행 내지 확인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부인의 선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인등기이행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인 선언을 별도로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부인대상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개인회생채무자로서 A를 수계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공여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들은 B가 자금 유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8.경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96,8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163,6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9,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에 관하여 설정된 I조합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I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부동산 목록

1. 광주 광산구 J 대 46㎡
2. 광주 광산구 K 답 890㎡
3. 전남 담양군 L 전 236㎡
4. 전남 담양군 M 답 2,998㎡ 끝.